| 제2021-140호<br>2021. 8. 25.<br>담당 : 교사 김 철 |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<br>해피노곡가정통신 | happy 노곡 |
|---|---|---|
| ☎ 교무실 (031) 535-0551, ☎ 행정실 (031) 535-8030, FAX (031) 536-0135 (우) 11112 이동면 성장로 869번길 4 | | |

# 2021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안내

해피노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우리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일환으로 「**2021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」에 관한 안내문**을 보내드립니다.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,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**가.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**

○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.
○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.
※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.

**나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정의**

○ 선행교육: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
○ 선행학습: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
**다.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?**

○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○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※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'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' (약칭 : 공교육정상화법)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
○ 적용 예외
-'영재교육 진흥법'에 따른 영재교육기관(영재학교, 영재학급, 영재 교육원)의 영재교육
-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
- 적용 배제 교과: 체육·예술 교과(군), 실과 등
- 초등학교 1~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: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. 초등학교 1~2학년에서 놀이·활동,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.

**3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의 책무**

○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: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.
○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: 교과협의회, 학년협의회,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내 기구들을 활용해 감독함.
○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: 교원, 학생,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함.
○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: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을 금지함.

**4. 학부모의 책무**

○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(수업공개의 날, 학부모 회의 등)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,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.

**2021. 8. 25.**

**포천노곡초등학교장(직인생략)**